지역사회 현안과 담론 발행 규정

2010. 12. 15. 제정
2012. 12. 20. 1차 개정
2018. 06. 01. 2차 개정
2020. 08. 16. 3차 개정
2024. 01. 02. 4차 개정
2025. 07. 10. 5차 개정
2026. 06. 28. 6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 규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본 연구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연구논문집 발간 및 학술도서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집 명칭) 본 연구소의 논문집 사회과학논총(社會科學論叢)을 개칭(改稱)하여 『지역사회 현안과 담론(Community Issues and Discourse)』을 발간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논문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 :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소속한 자로,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구성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을 구성할 때는 연구 및 저술실적, 연구 활동의 전문성 및 적극성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2.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3. 게재여부의 최종 판정
4. 편집체제 및 양식에 관한 사항
5. 표지의 색,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논문게재료, 심사료, 분량 초과 논문에 대한 초과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심사와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제6조(게재논문의 요건) 본 논문집은 연구소 규정 제3조에 제시된 목적에 적합한 사회과학 제 분양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의 성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논문을 게재한다.

제7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논문집은 연2회(6월 30일, 12월 30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게재논문 종류) 본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논문은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투고자격) 본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 투고 자격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
2. 학내외 인문·사회과학대학 관련 대학 이상 재임 교수
3.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
4. 석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
5.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험이 많은 분야관계자

제10조(투고방법) 원고투고는 아래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논문집 게재원고 투고 요령에 따라 연구소에 원고를 송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논문의 주제는 사회과학 관련 분야로 하며 기타 자세한 투고 요령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고『지역사회 현안과 담론』의 매호에 반드시 게재하여 홍보한다.
2. 논문 투고시 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며 투고 신청서에 KCI유사도 검사 결과를 기입한다. KCI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도가 20%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시 원고 작성은 게재원고 작성 세칙에 따른다.

제11조(논문 심사) 논문 심사는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3심으로 진행한다.

1. 1차 심사는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2. 2차 심사는 각 논문마다 3인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학내 외 학자들을 위촉하여 실시한다.
3. 2차 심사 후 수정후 재심의 경우 3차 심사(재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2차 심사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여부와 심사 결과를 방어한 설명을 확인한 후, 재심사 양식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제12조(논문접수 마감일)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고, 당해 호 발간 대상 논문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투고율 미충족으로 인해 투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료와 게재료)

1. 신규투고와 재투고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함께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투고자는 본 연구소에 게재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3. 본 조에서 정한 각종 비용은 해당 호 원고모집 시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되어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적용을 유보할 수 있다.

제14조(심사 연기/이월)

1.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선정 및 평가 지연 등의 사유로 심사마감이 어려운 경우 충분한 심사와 발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라 심사와 게재를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2. 심사 결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저자 요청 및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3. '수정 재심' 판정 논문은 재심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다음 호에 곧바로 재심을 진행한다. 단, '수정 재심' 논문이 다음 호에 재심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투고철회'로 처리한다.
4. 모든 이월 논문은 직후 집호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다.{예: 24집 1호에서 이월한 경우, 24집 2호에 심사 진행, 25집 1호로 다시 이월될 수 없다.(투고철회)}

제15조(게재 확정 전 수정본 및 최종원고 제출)

1. 투고자는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 이상인 경우, 자신의 원고를 학술지 투고규정과 맞는지 확인하여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지정한 기한까지 수정본이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원고가 투고 규정의 양식 및 형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저자에게 추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기한 내 수정본이 제출되지 않거나, 수정 내용이 투고 규정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에 대해 게재 보류, 차기 호 이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5.)

①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조(투고방법) 3항을 첨가하고, 별첨을 덧붙인다.

부칙(2012. 12. 20.)

①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2조(논문접수 마감일)을 발행예정일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수정한다.

부칙(2018. 06. 01.)

①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3조(심사료와 게재료) 3항을 3항과 4항으로 구분하고, 5항을 첨가한다.

부칙(2020.08.16.)

①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논문집 명칭)을 사회과학논총(社會科學論叢)에서 『지역사회 현안과 담론(Community Issues and Discourse)』로 개칭(改稱)한다.

③ 논문명 개칭 및 발행규정 전면 수정 보완한다.

부칙(2024.01.02.)

①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 논문집 발행을 연1회에서 연2회로 수정한다.

부칙(2025.07.10.)

① 이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4조(기타)를 제14조(심사 연기/이월)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한다.

③ 제15조(게재 확정 전 수정본 및 최종원고 제출)규정을 첨가한다.

④ 제16조(기타)규정을 첨가한다.

부칙(2026.06.28.)

①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3조(심사료와 게재료)규정을 수정 보완한다.